

인천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가단2752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1.07.2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4,934,3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4,934,3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지영

별지